

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 대관시설 관리 규칙

관리번호	부산디자인센터 0-00
제정일자	2018. 06. 05.
비 고	

제1조 (목적) 이 규칙은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의 대관 및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“대관”이라 함은 공연·전시·행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가 법인의 대관시설 및 기자재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.
- ②“사용료”라 함은 법인의 대관시설 및 기자재를 사용함에 따라 법인이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.
- ③“신청인”이라 함은 법인의 대관시설 및 기자재를 대여하고자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 (대관시설 종류 및 사용료) ①대관 할 수 있는 시설과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.

시설명	면적	수용인원	사용료 (공휴일 대관 시 20% 할증)			
			오전 (09:00~13:00)	오후 (13:00~17:00)	심야 (17:00~21:00)	
전시실	510㎡	-	200,000원(1일, 10:00~18:00)/수도광열비(30,000원)			
세미나실	A	161㎡	60명	100,000원	120,000원	120,000원
	B	142㎡	40명	80,000원	100,000원	100,000원
	C	68㎡	30명	60,000원	80,000원	80,000원
	D	69㎡	20명			
	E	68㎡	20명			
	F	120㎡	30명			
강연장	170㎡	80명	110,000원	130,000원	130,000원	
이벤트홀	668㎡	345명	250,000원 /수도광열비 (40,000원)	250,000원 /수도광열비 (40,000원)	250,000원 /수도광열비 (40,000원)	
이벤트홀로비	260㎡	-	70,000원	70,000원	70,000원	

②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. 정기대관은 전시실에만 해당되며 매년 2회(상, 하반기) 법인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공고신청, 승인, 확정한다. 수시대관은 전시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해당되며, 현재일에서 이를 후로 모든 날짜를 신청할 수 있다.(전시실은 정기대관 확정 후 잔여 일에 대해 수시대관으로 신청할 수 있다.)

③각 대관시설에서 사용가능한 기자재는 다음과 같다.

시설명	빔프로젝터(1회)	냉난방(시간당)		기타기자재(1일)	
		냉방	난방		
전시실	50,000원	8,000원	13,000원	이동식방송장비:100,000원 마이크(유/무선):10,000원 노트북:20,000원 생수:5,000원	
세미나실		A	5,000원		6,000원
		B	4,000원		5,000원
		C	3,000원		4,000원
		D			
		E			
F	5,000원	6,000원			
강연장		5,000원	6,000원		
이벤트홀	100,000원	10,000원	15,000원		
이벤트홀로비	-	7,000원	13,000원		

- ④제3조 3항의 기자재는 별도신청이 필요하며, 사용료가 부과된다.
- ⑤위 대관시설 및 기자재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.

제4조 (대관신청 및 사용시간) ①제3조 1항의 대관시설을 대여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부산디자인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대관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- ②신청인은 대관신청 시 요구하는 내용을 성실히 작성해야한다.
- ③법인의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.

오전 : 09:00~13:00	오후 : 13:00~17:00	심야 : 17:00~21:00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

단, 전시실은 1일 10:00~18:00를 기준으로 한다.

- ④제4조3항에서 규정된 시간 중 일부 시간만을 사용할 경우 전체 시간을 예약해야한다.
- ⑤다음 신청인을 위해 사용시간을 준수해야하며, 이를 어길 시 다음 대관이 제한되고, 추가비용을 부과한다.
- ⑥신청한 기자재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, 사용료 반환이 불가함으로 신중하게 신청해야한다.

제5조 (대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법인은 대관시설의 정기대관신청(전시실)을 승인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부합 여부를 기하기 위하여 법인 내에 정기대관심의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 운영한다.

②정기대관 심의위원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법인의 대표로 하며 위원은 대표가 법인에 소속된 사람으로 선정한다.

③심의방법은 신청 건별 승인 가부제로 승인하며, 기준은 전시내용과 신청단체 수준, 신청인의 과거 대관 사용실태, 법인의 전시실 운영계획에 따라 결정된다.

제6조 (대관승인 및 제한, 취소) ①법인은 정기대관(전시실)의 경우 대관심의 후 10일 이내, 수시대관의 경우 대관신청 접수 후 3일 이내에 대관의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, 대관승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신청인에게 대관용도를 추가 확인할 수 있다.

②법인은 대관승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.

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승인을 제한 할 수 있다.

- 1.공공질서유지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
- 2.이해당사자간 소란이나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행사
- 3.정치·종교적인 행사 및 집회 등
- 4.불법상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및 불법적인 공연이나 행사
- 5.사회통념상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공연이나 행사
- 6.과거 센터 대관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례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
- 7.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
- 8.위험한 인화물질 등으로 화재 등 재난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연 및 행사
- 9.기타 위원회에서 대관시설 운영 목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

④제6조 3의 내용 중 한 가지라도 부합될 경우 대관 취소 사유가 된다.

제7조 (사용료 납부 및 반환 기준 등) ①법인의 대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관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정기대관(전시실) 신청인은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해야하며, 잔액은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 수시대관 신청인은 계좌납부 시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에 입금을 하거나 카드납부 시 당일 입실하기 전에 사용료를 납부해야한다.

③정기대관(전시실) 사용을 위해 납부된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으며,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납부된 잔액은 취소시점 상관없이 전액 돌려받을 수 있고, 수시대관 사용 시 별도의 계약금은 없으며 취소 시 시점 상관없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.

④반환 시 반환청구서와 개인은 신분증, 단체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사본을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⑤납부한 사용료는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하다.

제8조 (사용료 특례) 원장은 아래의 내용에 해당할 경우 대관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①국가 및 정부기관, 지자체가 대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할 수 있다.

②국가 및 정부기관, 지자체가 후원하는 순수예술활동 및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.

③법인과 공동으로 하는 공연(전시, 행사)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제9조 (사용자의 의무) ①신청인은 대관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.

②신청인은 대관사용이 확실할 경우에만 대관신청(예약)을 하여야 한다.

③신청인은 대관기간 중 법인의 시설, 부대시설, 장비 또는 기타 시설과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④신청인은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법인의 시설, 부대시설, 장비 또는 기타 시설과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

⑤행사지원에 필요한 장비를 별도로 설치하거나 비치되어있는 기자재를 이동, 전시실의 경우 벽이나 가벽에 와이어 외 다른 도구로 작품을 전시할 경우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, 사용 후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.

⑥신청인은 행사기간 중 행사장 출입, 장내질서, 주차관리를 위한 안내원을 배치하여 질서정연하게 진행하여야 한다.

⑦신청인은 행사 시 자체적으로 안전사고 대비책을 세워야 하며, 사고 발생 시 사고에 대한 조치 및 수습에 책임을 져야한다.

제10조 (배상책임) ①제9조 (사용자의 의무)를 위반할 시 신청인은 배상책임이 따른다.

②신청인은 대관시설 등의 사용에 따라 발생한 시설 장비 등의 훼손 또는 멸실 등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③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이용객의 신체적,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칙은 2018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.